

경북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리모델링에
따른 EHP냉난방기 구매(설치) 시방서

2026. 9.

경 북 대 학 교 병 원

1. 적용범위

본 시방서는 경북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 설치되는 EHP냉난방기 구매(교체) 및 기존 냉난방기 철거에 적용한다.

2. 입찰참가자격

- 가.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」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냉난방기(4010178702)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
- 나.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(주력분야: 기계설비공사)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
- 다. 제조사로부터 발행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(A/S) 협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

3. 제품 기준 및 사양

- 가. 냉난방기 규격 및 수량은 내역서와 도면을 참고한다.
- 나. 냉난방기는 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와 추진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1등급 제품으로 납품한다. 다만, 시장에 1등급 생산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 감독관 확인 후 차상위 제품으로 납품할 수 있다.

4. 제작 및 설치 승인

- 가.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설계, 제작,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·설치하여야 한다.
- 나. 납품하는 제품은 관련 법령 및 규정 <KSC9306 「에어컨디셔너」> 냉난방기기의 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발주처에서 제시한 작업일정에 따라 공정예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- 라. 동일한 규격의 제품이지만 자재승인일과 납품일 사이에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 후 납품할 수 있다.

5. 제출서류 관련

- 가. 관련 법령,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한다.
- 나. 발주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6. 기기 및 재료

- 가. 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,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나. 필요에 따라 발주처의 자재 시험 요청이 있을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7. 자재 관리

- 가.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,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.
- 나. 납품 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납품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.
- 다.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라. 발주처에는 장비를 보관할 공간이 없으므로 실외기, 실내기 등 부피가 큰 장비는 반드시 설치 당일 반입해야한다.

8. 시험 및 검사

- 가.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발주처에서 필요하여 성능시험 요구할 경우 발주처 관계자 임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, 실시 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.
- 다.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, 성능, 연료 소비량, 소비전력, 소비전류, 성적계수(COP)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.
- 라.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며, 이와 연관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
9. 설치

- 가. 모든 제품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,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치한다.
- 나. 감독관이 지시하는 안전, 환경, 위생, 화재예방, 정리정돈, 공해방지 등의 현장관리상 보완해야 할 사항은 준수해야 한다.
- 다. 작업자는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하며 반드시 안전모,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라.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(박스, 비닐 등)은 도급자가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한다.
- 마. 설치기한은 착수 후 75일 이내로 한다.**

10. 품질 보증 및 서비스 제도

- 가. 냉난방기 공급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-16호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시행하여야 한다.
- 나. 냉난방기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, 압축기의 품질 보증기간은 4년으로 한다.
- 다. 설치검사 완료 후 2년간의 하자보수 책임을 지며 하자구분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유권해석에 따른다.

11. 유의사항

- 가. 본 공사는 「경북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리모델링 공사」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구매(설치)하는 건으로,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자는 양질의 자재와 숙련된 인

부를 투입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나. 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자재를 반입하고 설치해야하며, 공사현장에 설치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자재를 납품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.

다. 작업 중 발생한 박스, 비닐 등의 폐기물은 도급자가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한다.